

<p>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2조[건축물폐채류 등 수집·운반업허가] ①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.</p> <p>②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·운반업허가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의 허가내용을 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. 변경허가시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제2항의 건축물폐채류 수집·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허가요건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간집하장확보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再活用品 收集實績('95.1~3)</p>	<p>○委員長代理 權赫柱 委員 여러분, 그리고 清掃事業本部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, 長時間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</p> <p>이상으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 清掃事業本部所管 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議事棒 3打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1時 18分 散會)</p> <hr/> <p>○出席委員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權赫柱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李迎春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金康植</td> </tr> <tr> <td>金壽漢</td> <td>李昌根</td> <td>全潤枸</td> </tr> <tr> <td>崔丁植</td> <td>金亨根</td> <td>李基烈</td> </tr> </table> <p>○專門委員</p> <p>李贊穆</p> <p>○出席公務員</p> <p>清掃事業本部 本部長 金東勳</p> <hr/> <p>【書面答辯】</p> <p>○金亨根委員</p> <p>(質疑要旨)</p> <p>區別로 收集한 再活用品을 民間收集商에 販賣한 量과 資源再生公社에 무상으로 供給한 量('95.1~3月)은?</p> <p>(答 辯)</p>	權赫柱	李迎春	金康植	金壽漢	李昌根	全潤枸	崔丁植	金亨根	李基烈
權赫柱	李迎春	金康植								
金壽漢	李昌根	全潤枸								
崔丁植	金亨根	李基烈								

(單位：톤)			
區 分	合 計	自 治 區	民 間 收 集 商
총 수집량	384,788	60,449	324,339
1일 평균	4,275 (100%)	672 (15.7%)	3,603 (84.3%)

自治區 收集 再活用品 處理實績

(單位：톤)			
區 分	計	賣 却	無償引繼
計	60,449	59,963	486
民間收集商	35,867	35,867	-
資源再生公社	24,582	24,096	486

※自治區別 處理實績 별첨